

무배당 알리안츠모아모아연금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별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모아모아연금보험

2. 보험의 구성

보험의 세목	생존연금 지급형태		
적립형	종신연금	종신연금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보증기간부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종신연금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거치형	종신연금	종신연금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보증기간부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종신연금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즉시형	종신연금	종신연금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보증기간부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확정연금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구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Y)	
	납입기간	월납보험료	나이		
적립형	5년	12만원 이상	만15세 ~ (Y - 16)세	45세 ~ 70세	
	7년	10만원 이상	만15세 ~ (Y - 13)세		
	10년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	만15세 ~ (Y - 16)세		
		8만원 이상	만15세 ~ (Y - 13)세		
	11년 ~ 전기납 (Y세납)	12만원 이상	만15세 ~ (Y - 12)세		
거치형	일시납	1,000만원 이상	만15세 ~ (Y - 5)세	45세 ~ 70세	
즉시형			종신연금	45세 ~ 70세	
			확정 연금	10년	45세 ~ 71세
				15년	45세 ~ 73세
				20년	45세 ~ 71세
			상속연금	45세 ~ 66세	

(주) 주된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4. 보험기간

구분	적립형, 거치형	즉시형
제1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2보험기간	종신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상속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5. 보험료 납입주기

- 가. 적립형 : 월납
- 나. 거치형, 즉시형 : 일시납

6.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이 없음

7. 납입보험료의 한도

이 보험의 적립형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보험료로 한다.

가. 기본보험료 : 가입나이별로 상이하며 3호의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참조

나. 추가보험료 : 연간(보험년도 기준)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8.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과 거치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 1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다.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마.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시이율 계산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3)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frac{\quad + \quad}{2}$$

A. 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 I : 직전 6개월간 투자 수익
- E : 직전 6개월간 투자 비용
- A₆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B.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4) 적립형과 거치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 미만에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1년 미만	공시이율 × 70%
1년 이상 2년 미만	공시이율 × 80%
2년 이상 3년 미만	공시이율 × 85%
3년 이상 4년 미만	공시이율 × 90%
4년 이상 5년 미만	공시이율 × 95%

- (5) (2)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2)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6)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7) 중도해지 시 해지이율 및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 (8)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0. 기타

가. 추가보험료에 관한 사항

적립형의 추가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일부터 제1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부리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연금지급개시시에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라.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바.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MIN [납입기간, 10]

거치형, 즉시형 : 일시납보험료

단, 즉시형의 보장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 보험료의 15%로 한다.

사.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적립형과 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제(1)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
개시 시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